

6. 건설기계관리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728호 1999. 1. 29

개 정 이 유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해체로 환경이 오염되고 주요 부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건설기계의 안전도가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크므로 자동차폐차업의 경우와 같이 건설기계폐기업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전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건설기계의 폐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종류에 건설기계폐기업을 추가하고, 건설기계폐기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요청을 받은 때의 절차를 정함(법 제2조제2호 및 제34조의3).
- 나. 건설기계의 정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에는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비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법 제2조4호)
- 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종전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므로써 건설기계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면허취득이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27조제5호).

라. 건설기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자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의2).

마.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건설기계를 무단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매각 또는 폐기 등의 강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 제3항 및 제34조의2).

※ 시행일 :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1999. 7. 30).

주택회보